

1997年度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出承認의 件

審 查 報 告 書

1. 回附決算

가.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2.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8월 31일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8년 11월 25일

다. 상정일자 : 제62회 평창군의회(정기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8. 12. 7) : 상정 및 심의

3.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신영선)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을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나. 주요골자

-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중 총예산액은 1,165억 6,056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508억7,156만원으로서 129%임.
- 세출결산액은 993억 5,902만원이며, 세계잉여금 515억 1,253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34%임.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예산액은 1,026억 5,487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42억 7,554만원 130%임.
- 세출결산액은 922억 2,224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20억 5,33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31%임.
-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139억 568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65억 9,601만원으로 119%에 달하고 있음.
- 세출결산액은 71억 3,678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4억 5,923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57%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일반회계 세입부문

- 지방세는 징수목표액 97억 8,843만원대비 징수액은 102억 8,236만원으로 4.8%의 증수실적을 거두었으며, 이는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이 전체 세입에 고르게 분포되어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총 세입중 징수결정후 미수납된 27억 1,423만원은 체납액으로서 IMF등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체납액이라 판단되고 예년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집행부의 적극 징수노력이 요구되며,
-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176억 7,251만원대 징수액은 494억 9,374만원으로서 357%를 증액 증수하였으나, 이는 전년도 이월금 304억 9,533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실제 징수결정액 501억 8,909만원에 비하면 98.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어 6억 9,535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318억 4,300만원 전액 수납되었으며,
-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98억 3,076만원중 87억 7,372만원만 수납되어 10억 5,704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음.
- 국도비보조금은 예산액 335억 2,106만원대비 338억 8,270만원이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339억 6,195만원에는 7,925만원이 모자라게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를 종합하며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 수납액 1,342억 7,554만원은 예산액의 130.8%로서 316억 2,066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잉여금 자금의 고율의 정기예금, 적금, 환매채 등 예치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와 전년도 사업비 이월, 도세 징수교부금의 증가, 공유 재산 매각수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 미징수액은 27억 1,423만원으로서 미수납액 결손처분 4,903만원을 제외한 26억 6,519만원은 이월금임.
- 사유별 현황은 채무자 거소불명 6,086만원, 징수유예 3,066만원, 재력부족 5억 689만원, 납세자 태만이 7억 7,842만원, 기타 12억 8,835만원으로
- 납세자 태만이 미수납액 전체금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독려반 편성운영, 이동상황 등을 파악 관리하여 납세의무의 형평성 유지와 자진납세 풍토정착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세입부분은 대부분 수공이 되는 사안들 이므로 '97년도 세입결산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됨.

나. 일반회계 세출부분

○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 현액 1,331억 5,021만원에 대하여 69.3%인 922억 4,224만원을 집행하고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5%에 해당되는 60억 9,89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 주요사유는 평창장학금 기금출연 5천만원의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각 항목별 예산액과 결산액을 분석하여 보면

-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66억 2,747만원이고 잉여율은 4.9%로서
- 예년에 비하여 1% 정도가 낮은 추이이며 전액 '98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며
- 순세계 잉여금이 이처럼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순세계 잉여금 발생 예측 판단과 심사분석의 미흡에서 초래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 이로 인한 가용재원의 사장화로 건전재정 운영에도 미흡하다고 하겠음.
- 예산전용은 총 10건에 1억 6,862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규정한 전용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감자큰잔치 행사추진, 솔잎혹파리임목벌채에어콘구입비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신리복지회관 신축공사의 142건에 344억 7,831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82건에 236억 8,743만원이며, 사고이월은 58건에 82억 8,683만원으로
- 주요내용은 대화쓰레기매립장조성의 승인지연, 송정교 가설공사의 공기부족,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 미완료, 신리 ~ 마평간 군도 확·포장업체 부도지연, 고냉지채소 산지 유통시설 토지매입 지연등에 기인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은 문화예술회관, 문화체육관건립, 공설묘지 조성사업 3개 사업에

25억 404만원이 이월되었으나, 소요액 과다로 재원확보가 큰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등 이월 사업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회계년도내 사업목적 달성과 성과거양을 위해 시정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임.

- 일반회계의 안정적 수입인 지방세, 교부세, 세외수입대 지출의 건전성 지수는 0.906으로서 전년도 1.05보다 0.094가 미달되고 있음으로 경영수익에 힘써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 경상적 경비를 자체능력으로 해결하는 자력정도인 책임재정 지수는 1,838로서 자체사업비 재원조달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음.

○ 기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로

- 수납액은 예산액의 119.3%인 165억 9,601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상수도특별회계 이월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와 농공단지 특별회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증가에 기인하며,
-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9.2%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하수도 수납액은 93.7%로서 미수납액 6,06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7%인 1억 2,291만원으로서 이는 주로 상하수도 사용료와 납기미도래, 정리유예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지출액은 예산현액 166억 2,587만원의 42.9%에 해당되는 71억 3,678만원이고 이월액중 명시이월액은 81억 2,321만원, 사고이월액은 3억 576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상수도확장 및 관로교체공사의 공기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에 해당하는 10억 956만원 3,015만원으로 이는 주로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집행잔액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을 살펴보면
 봉평상수도 시설확장 2차 공사비 지급에서 지급기준 미준수와 진부상수도 시설확장 2차공사 또한 지급 지연으로 이자 지급 문제가 발생하는등 개선이 요구됨.
- 기타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세입·세출 결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1.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 장평 IC공사에 따른 상수도관로 조기이설 설계비 1,500만원은 도로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아닌지 ?	○ 용평면 백옥포리 용평 상수도 취수장에서 국도6호선 고속도로 장평육교 밑을 통과하는 관로로서 4차선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장평IC 신설 구간에 사업비로서 - 한국도로공사 영동사업소 1억6,600만원을 부담한 사항이며 실시설계비로 먼저 1,500만원을 부담후 향후 한국도로공사와 정산한 사항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2. 97년도 이월액은 432억 9,459만원으로 전년대비 30.3%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도 수차례 지적한 사항임에도 계속늘고 있는 사유는?</p>	<p>○ 국도비가 연말에 집중적인 배정에 따른 이월액이 있고,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게되면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절감예상분야, 수해복구사업 연말배정 등을 총망라해서 이월액이 증가한 것이지 사업추진의 부진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은 없음.</p>
<p>3.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이월된 사업은 없다고 하나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사고이월액이 굉장히 많은데 97년도만 보더라도 58건 82억 8,000만원으로 사고이월은 추진력 부진에서 오는 것이라 판단되고, 예산액에 31%에 가까운 예산액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는 집행부의 추진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p>	<p>○ 사고이월 문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태만도 있으며 정밀진단 하겠음</p>
<p>4. 준공검사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댓가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 법규연찬 및 업무추진 철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회계법규 연찬만으로 충분한지?</p>	<p>○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해 이는 집행부의 업무미숙이라고 봄.</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5. 미탄상수도 상수도 사용료 7,7,43,651원을 군 금고에 불입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지연불입 사례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p>	<p>○ 관련부서와 읍·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임.</p>
<p>6. 1997년도 임업경영과 전용액 58,700천원의 이유는?</p>	<p>○ 솔잎혹파리 피해복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에 민간자본보조 401-01에 751,968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시설비로 58,700천원을 전용하여 산화피해지인 미탄면 백운리 산66번지와 12필지 균유림 25ha와 진부면 하진부리 산38-1번지 외 11필지 고속도로변 8ha 합계 33ha피해목 생산 및 정리작업비로 지급한 것으로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지급한 것임.</p>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건의사항 : 없 음

나. 기타 특별사항 : 없음

1997년도

세 입 세 출 결 산 서

평 창 군

세입 · 세출결산 총괄설명

1. 199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 총괄은

- 세입예산액 116,560,560,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 150,871,561,510 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49,776,085,421 원 (전년도 이월금33,215,525,421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99,359,029,185 원이며,
- 그 차인액은 51,512,532,325 원으로서 지방제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51,512,532,325 원은 다음 인도에 각각 이월한다.
-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사이월 32,189,524,210 원
 - 사고이월 8,599,727,841 원
 - 계속비이월 2,505,698,570 원
 -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10,795,970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06,785,734 원이다.

2. 1997년도 일반회계는

- 세입예산액은 102,654,879,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4,275,544,437 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33,150,213,841 원(전년도 이원금 30,495,334,841 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92,222,243,250 원이며,
- 그 차인액은 42,053,301,187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0원, 이자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42,053,301,187 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 각각 이원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사이월 24,029,348,210 원
 - 사고이월 8,293,964,181 원
 - 계속비이월 2,505,698,570 원
 -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96,81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27,477,226 원이다.

3. 1997년도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가. 총괄결산상황은

○ 세입예산액은 13,905,681,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596,017,073 원이며,

○ 세출예산한액 16,625,871,580 원(전년도 이월금 2,720,190,58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7,136,785,935 원이며,

○ 그 차인액은 9,459,231,138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0원, 이자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9,459,231,138 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사이월 8,160,176,000 원

· 사고이월 305,763,660 원

· 개속비이월 0 원

· 보조금 집행잔액 13,982,970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개잉여금은 979,308,508 원이다.

나.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11,495,026,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293,753,610 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4,215,206,580 원 지출액(전년도 이월금2,720,190,580원 포함)에
지출액은 5,160,516,445 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9,133,237,165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9,133,237,165 원은 회계별로 다음인도에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8,123,216,000 원
- 사고이월 305,763,660 원
- 계속비이월 0 원

· 보조금 집행잔액 1,948,7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02,308,795 원이다

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645,951,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4,496,384 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645,951,000 원 지출액(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지출액은 454,491,050 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5,334 원으로

88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5,334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0 원

· 사고이월 0 원

· 계속비이월 0 원

· 보조금 집행잔액 0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34 원이다.

라.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1,216,861,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16,904,520 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216,861,000 원 지출액(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지출액은 1,203,181,570 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3,722,950 원으로

⊕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13,722,950 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한다.

○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0 원
- 사고이월 0 원
- 계속바이월 0 원

· 보조금 집행잔액 12,034,260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어금은 1,688,690 원이다.

마. 개발특별회계 내용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339,486,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1,131,435 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339,486,000 원 지출액(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지출액은 246,690,950 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24,440,485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124,440,485 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사이월 0 원

· 사고이월 0 원

· 계속비이월 0 원

· 보조금 집행잔액 0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440,485 원이다.

바.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121,818,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8,415,875 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21,818,000 원 지출액(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지출액은 30,227,920 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38,187,955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138,187,955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사이월 0 원
- 사고이월 0 원
- 계속비이월 0 원

· 보조금 집행잔액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8,187,955 원이다.

사.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40,119,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033,380 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40,119,000 원 지출액(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지출액은 37,000,000 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3,033,380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부상환액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3,033,380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사이월 0 원

· 사고이월 0 원

· 계속비이월 0 원

· 보조금 집행잔액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개잉어금은 3,033,380 원이다.

아.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42,420,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281,869 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42,420,000 원 지출액(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지출액은 4,678,000 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46,603,869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46,603,869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사이월 36,960,000 원

· 사고이월 0 원

· 개속비이월 0 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43,869 원이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상황

(단위: 원)

구분	세입결산액 (가)	세출결산액 (나)	잉여금(다) (가-나)	잉여금내역					신년도 재우상한	기금반입 내역	
				임시이월	시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시용잔액	순세계잉여금			
합계	150,871,561,510	99,359,029,185	51,512,532,325	32,189,524,210	8,599,727,841	2,505,698,570	608,847,260	7,608,734,444	-	-	
일반회계	134,275,544,437	92,222,243,250	42,053,301,187	24,029,348,210	8,293,964,181	2,505,698,570	596,813,000	6,627,477,226			
특별회계	계	16,596,017,073	7,136,785,935	9,459,231,138	8,160,176,000	305,763,660	-	12,034,260	981,257,218	-	-
	상수도특별회계	14,293,753,610	5,169,516,445	9,133,237,165	8,123,216,000	305,763,660	-	704,257,505			
	주택사업특별회계	454,496,384	454,491,050	5,334					5,334		
	인로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	1,216,904,520	1,203,181,570	13,722,950				12,034,260	1,688,69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371,131,435	246,690,950	124,440,485					124,440,485		
	농림지구관리 사업특별회계	168,415,875	30,227,920	138,187,955					138,187,955		
	방전소 주변 특별회계	40,033,380	37,000,000	3,033,380					3,033,380		
	주차장특별회 계	51,281,869	4,678,000	46,603,869	36,960,000				9,643,869		

세출결산총괄

(단위: 원)

구분	예산액 (가)	예산성립후액 (나)	예산현액 (가)+(나) (다)	지출원액 (라)	지출액 (미)	이월액 (바)	불용액 (다-마)
합계	116,560,560,000	33,215,525,421	149,776,085,421	99,379,029,185	99,359,029,185	43,294,950,621	7,122,105,615
일반회계	102,654,879,000	30,495,334,841	133,150,213,841	92,242,243,250	92,222,243,250	31,829,010,961	6,098,959,630
일반행정	20,864,900,000	2,576,031,481	23,440,931,481	21,251,192,517	21,251,192,517	591,339,781	1,598,399,183
사회개발	28,023,889,000	13,079,705,300	41,103,594,300	24,487,951,026	24,467,951,026	14,467,813,640	2,167,829,634
경제개발	50,096,429,000	14,973,616,000	65,070,045,000	44,641,911,382	44,641,911,382	19,769,857,510	1,258,276,138
민방위비	444,731,000	15,000,000	459,731,000	401,837,660	401,837,660	0	57,893,340
자원및기타경비	2,624,930,000	△149,018,000	2,475,912,000	1,459,350,665	1,459,350,665	0	1,016,561,335
총괄	0	2,720,190,580	2,720,190,580	0	0	0	2,720,190,580
특별회계	13,905,681,000	2,720,190,580	16,625,871,580	7,136,785,935	7,136,785,935	8,465,939,660	△1,697,044,595
상수도특별회계	11,495,026,000	2,720,190,580	14,215,216,580	5,160,516,445	5,160,516,445	8,428,979,660	625,720,475
주택사업특별회계	649,951,000	0	649,951,000	454,491,050	454,491,050	0	195,459,95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216,861,000	0	1,216,861,000	1,203,181,570	1,203,181,570	0	13,679,430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	339,486,000	0	339,486,000	246,690,950	246,690,950	0	92,795,05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	121,818,000	0	121,818,000	30,227,920	30,227,920	0	91,590,080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	40,119,000	0	40,119,000	37,000,000	37,000,000	0	3,119,000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	42,420,000	0	42,420,000	4,678,000	4,678,000	36,960,000	782,000

세 입 결 산 총 관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 재 등 증감액	세입예산액 ①	잠 금 액 ②	수 입 액			미수납액 (③-④)	미수납액처리		비 율	
					수입총액 ③	과 오 납 민환액④	진 수 납 세 액 ⑤=(③-④)		감손 치분	이원	회계 비율	실제 비율
합 계	116,560,560,000	33,215,525,421	149,776,085,421	153,708,704,012	151,067,218,983	185,657,473	150,871,561,510	2,837,142,482	19,001,150	2,588,108,312	90.9	97.4
계	102,654,879,000	30,495,334,841	133,150,213,841	136,989,774,491	134,445,445,620	160,901,183	134,275,544,437	2,714,230,054		2,663,195,881	101	98.0
지방세	9,788,436,000		9,788,436,000	11,164,965,209	10,300,207,984	17,839,248	10,282,368,736	882,596,473		882,596,473	95.2	92.1
보통세	8,957,805,000		8,957,805,000	9,864,291,846	9,440,324,104	14,161,548	9,426,162,556	438,129,290		438,129,290		
복합세	655,931,000		655,931,000	612,328,420	591,156,450	2,956,180	588,200,270	24,128,150		24,128,150		
과년도수입	174,700,000		174,700,000	688,344,943	268,727,520		268,005,910	420,339,033		420,339,033		
새외수입	17,672,517,000	30,495,334,841	48,167,851,841	50,198,780,462	49,645,841,636	152,061,935	49,493,749,701	705,030,761	19,001,150	616,306,111	103	98.6
강상적세외수입	8,409,034,000		8,409,034,000	10,129,661,396	9,890,679,396	1,939,855	9,888,739,541	240,922,150	19,001,150	182,197,780		
업시적세외수입	9,263,483,000	30,495,334,841	39,758,817,841	40,069,118,791	39,755,132,240	150,122,080	39,605,010,160	464,108,631		464,108,631		
지방교부세	31,843,000,000		31,843,000,000	31,843,000,000	31,843,000,000		31,843,000,000				100	100
지방양여금	9,830,762,000		9,830,762,000	9,830,762,000	8,773,722,000		8,773,722,000	1,057,040,000		1,057,040,000	112	112
보 조 금	33,520,164,000		33,520,664,000	33,961,957,000	33,882,704,000		33,882,704,000	79,253,000		79,253,000	98.9	100
국고보조	20,250,994,000		20,250,994,000	20,298,646,500	20,258,646,500		20,258,646,500	39,626,500		39,626,500		
도비보조	13,269,170,000		13,269,170,000	13,663,684,000	13,624,057,500		13,624,057,500	39,626,500		39,626,500		
특 별 회 계	13,905,681,000	2,720,190,580	16,625,871,580	16,718,929,521	16,611,773,363	15,756,290	16,596,017,073	122,912,428		122,912,428	92.7	91.9
주민소득기원및생활안정기금	339,486,000		339,486,000	405,594,915	371,131,435		371,131,435	34,463,480		34,463,480	100	91.5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121,818,000		121,818,000	184,217,875	168,415,875		168,415,875	15,801,980		15,801,980	138	91.1
발전소주변지역기원사업	40,119,000		40,119,000	40,033,380	40,033,380		40,033,380				99.8	100
주차장특별회계	42,420,000		42,420,000	63,321,869	51,651,869	370,000	51,281,869	12,040,000		12,040,000	108	81
주택사업특별회계	649,951,000		649,951,000	454,496,384	455,125,134	628,750	454,496,384				70	97.7
상수도특별회계	11,495,026,000	2,720,190,580	14,215,216,580	14,354,360,578	14,308,511,150	14,757,540	14,293,753,610	60,606,968		60,606,968	100	99.6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216,861,000		1,216,861,000	1,216,904,520	1,216,904,520		1,216,904,520				100	100